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350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7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위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대상 추가 범위를 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’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‘북한이탈주민 가정’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의 범위 규정 및 안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규정에서 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’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수정함.
-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령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)의 시행일(2025.4.23.)과 동일하게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북한이탈주민"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"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"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
2. 생활고충·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
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
4. 의료 및 돌봄 지원
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
7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8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협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3.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2025. 4. 23. 부터 시행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"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"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,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</p> <p>2. 생활고충·법률·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</p> <p>3.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북한이탈주민 가정"이란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혼인·입양·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.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하며, 지원 범위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생활고충·법률 ----- -----</p> <p>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</p>	<p>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협회의 기능) 협회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 <u>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 항</u></p> <p>2. <u>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4. <u>의료 및 돌봄 지원</u></p> <p>5. <u>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</u></p> <p>6. <u>북한이탈주민의 사회 통합 및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인식개선</u></p> <p>7.·8. (현행 제4호 및 제5 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협회의 기능) ---- ---- <u>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 에 관한 다음</u> ----.</p> <p>1. <u>취업</u> ----- ----- --</p> <p>2. <u>교육지원</u>----- 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7.·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협회의 기능) (<u>현 행과 같음</u>)</p> <p>1.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 <p>2. <u>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·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5. 4. 23. 부 터 시행한다.</u></p>
---	---	--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
2. 생활고충·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
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
4. 의료 및 돌봄 지원
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
7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8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사업 등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2.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3.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2025. 4. 23.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(생략)</p> <p>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</p> <p>2. <u>생활고충·법률·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</u></p> <p>3. <u>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</u></p> <p><신 설> <신 설> <신 설>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7조(협의회의 기능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·4. (생 략)</p>	<p>제4조(지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1. 언어·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<u>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</u></p> <p>2. <u>생활고충·법률</u> ----- -----</p> <p>3. <u>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</u></p> <p>4. <u>의료 및 돌봄 지원</u></p> <p>5. <u>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</u></p> <p>6. <u>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</u></p> <p>7.·8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 음)</p> <p>제7조(협의회의 기능) (현행과 같 음)</p> <p>1. (현행과 같 음)</p> <p>2. <u>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 음)</p>